

긴급복지지원제도는

생계곤란 등의 위기상황에 처하여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신속하게
단기적으로 지원하여 위기상황 해소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



신청은 어디에 하나요?

▶ 신청방법

- 거주지 관할 시군구 또는 읍면동
- 보건복지상담센터
(국번없이 129, 24시간 긴급지원 상담 시군구로 연계)
- 제출서류 : 금융정보제공동의서(필수)
기타 증빙자료(위기사유·소득재산 등 확인 필요시)



“긴급복지지원제도”

위기상황에 처한 국민을 신속히 지원하여 드립니다.

365일 24시간 긴급복지 지원 상담·신청해 드립니다.

시·군·구 / 읍·면·동 신청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누가 긴급지원대상이 되나요?

▶ 소득·재산 기준 (2019년)

소 득	346만원 이하 (월, 4인기준)	
재 산	대도시	18,800만원 이하
	중소도시	11,800만원 이하
	농 어 촌	10,100만원 이하
금융재산	500만원 이하 (단, 주거지원의 경우 700만원 이하)	

▶ 갑작스런 '위기사유'로 생계유지 등이 곤란한 경우

▶ '위기사유'란?

1.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2.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放任) 또는 유기(遺棄)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3. 가정폭력 또는 가구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4. 화재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5.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급여가 중지된 경우 등
6. 그 밖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로서
 - ① 주소득자와 이혼한 때
 - ② 단전된 때
 - ③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폐업·사업장의 화재 등 실질적인 영업곤란으로 생계가 곤란한 경우
 - ④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생계가 곤란한 경우
 - ⑤ 가족으로부터 방임(放任)·유기(遺棄) 또는 생계곤란 등으로 노숙을 하는 경우

※ 그 밖에도 각 지자체에서 조례로 위기사유를 추가로 정하고 있으므로, 개별 지자체에 문의해주세요.

어떤 지원을 받을수 있나요?

▶ 지원종류별 지원수준 (2019년)

지원 종류	지원 내용		최대 지원회수
주 급 여	생계지원	1,194,900원 (월, 4인기준)	6회
	의료지원	3,000,000원 이내 (회)	2회
	주거지원	대도시 643,200원 이내 (월, 4인기준) 중소도시 422,900원 이내 (월, 4인기준) 농어촌 243,200원 이내 (월, 4인기준)	12회
	사회복지 시설이용	1,450,500원 (월, 4인기준)	6회
부 가 급 여	교육지원	초 221,600원/분기 중 352,700원/분기 고 432,200원/분기 및 수업료·입학금	2회 (주거지원 4회)
	그밖의 지원	연료비 98,000원 (월, 동절기10~3월) 해산비 600,000원 (인) 장제비 750,000원 (인) 전기요금 500,000원 이내 (최대)	1회 (연료비 6회)

지원받은 금액을 반환해야 할 수도 있나요?

▶ 지원중단 및 비용환수

-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 지원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
- 지원 적정성 심사결과 긴급지원이 적정하지 아니한 경우 지원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
- 지원기준을 초과하여 지원을 받은 경우 그 초과 지원 상당분
- 반환명령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